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3
----------	-----

2023. 10.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14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김광심 의원)

화재 발생 시 질식사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공공청사내 방연 마스크 비치·관리에 관해 구청장에게 주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그 외에도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안내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강남구가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서 필요로 하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하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¹⁾을 감안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유사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질 의 : 제5조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면 민간위탁을 위한 요건으로 보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문구 수정에 대해 발의자 생각은 어떤가
- 답 변 :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고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로, 수정 제안에 동의함

7. 토론 요지

-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변경하는 수정동의안에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43호

발의일자 : 2023. 10. 16.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위탁 가능 규정을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위탁 방식으로 한정적 해석을 없애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전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위탁 가능 규정을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이 경우 화재”를 “화재”로, “등에 안전교육을 위탁할”을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할”로 한다.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안전교육)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u>이 경우 화재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u>	제5조(안전교육)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u>화재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청사에 방연마스크가 적정하게 비치·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방연마스크 비치 안내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화재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
----------	-----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김광심·김현정·노애자·

이향숙·김민경·강을석·

박다미·김영권·안지연·

김진경·이도희·오온누리·

이동호·복진경 의원

(이상14인)

1. 제안이유

화재 발생 시 질식사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청사에 방연마스크가 적정하게 비치·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방연마스크 비치 안내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